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됨. 이를 고려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2024.5.28. 시행)해 예외적으로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에 해당하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1조제4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4. -----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종	-----
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	-----
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	----- (-----
행하는 기간은 <u>2024년 11월 1</u>	----- <u>2028년 12월 31</u>
<u>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u>	<u>일까지로 한정한다)</u>
<u>로 한정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연 락 처	(044) 202 - 3345